



-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3.



김 정 희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정희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 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과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22
----------	----------

발의일자: 2023. 3. 3.

발의자: 김정희, 박종길, 최홍린, 임미연,
박왕규, 서보영, 이진환, 김장관

1. 제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 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과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함(안 제7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 나.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 및 처우개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